

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결 과 1992. 6. 16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 문교사회위원회
- 나. 제출 및 회부일자
- 제출일자 : 1992년 6월 2일
  - 회부일자 : 1992년 6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임시회
-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2. 6. 15) 상정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 제안설명자 교육청 관리국장 김근학 )

#### 가. 개 정 이 유

공유재산의 대부(사용)료는 公示地價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대부(사용)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트인한 사용자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 요 골 자

- 공유재산대부료(사용료, 변상금포함)가 전년도보다 10%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부료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.

증 가 율	대 부 료 인 상 율
10 ——— 20 %	10 ——— 13 %
20 ——— 50 %	13 ——— 16 %
50 ——— 100 %	16 ——— 19 %
100 ——— 200 %	19 ——— 22 %
200 ——— 500 %	22 ——— 25 %
500 % 이상	25 % 이상

- 대부료 산정은 1990.11.10이후의 대부료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 전문위원 김영만 )

공유재산의 대부(사용)료는 公示地價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(사용)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(1990. 11. 6) 제92조 제3항의 개정으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10%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부료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인 1990.11.10 이후의 대부료(사용료, 보상금 포함)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- 5. 트 른 요 지 : " 없 음 "
- 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- 7. 스 수 의 견 요 지 : " 없 음 "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개정 조례안

나. 신.구문 대비표